

보안심사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5.22. 개정 2022.03.04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능)

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보안내규 제정 및 개정
2. 각 부서별 보안대책 수립
3. 신원 특이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
4. 공무 해외여행자 추천 및 처리
5.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
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구성)

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위원 3인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에는 총무처장, 위원에는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이 당연직이 된다. <개정 2022.03.04.>

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
-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1.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보안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)

- ① 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보안담당실무자 또는 책임자가 된다.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비밀유지의무)

위원은 국가 및 학교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.

제10조 (지침)

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